

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제기 공고

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1. 사건의 표시

사건번호 :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9387 증권관련집단소송

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자 : 이재형 외 185

소송대리인 :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, 김주영, 변환봉, 송성현, 박필서

피고 : 동부증권 주식회사, 채무자 주식회사 씨모텍의 관리인 박영구

2. 총원의 범위

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. 1. 28. 발행한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매거래정지일인 2011.

3. 24.까지 계속하여 보유한 자

3.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

(1) 청구의 취지

피고들은 연대하여 총원에게 1,0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. 1. 28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(추후 총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구성원들이 확정되면 위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)

(2) 청구의 원인

피고들은, 주식회사 씨모텍이 2011. 1. 28. 실시한 유상증자의 투자설명서 및 증권신고서에 증권인수인의 분석의견 부분에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주식의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함으로써, 위 분석의견을 믿고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들(총원)에게 손해를 입혔는바, 위 유상증자의 발행인 내지 인수인으로 서 위 총원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25조 제1항).

4. 대표당사자 선임신청

총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서 위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범원에 대표당사자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신청인은 경력과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신청서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9조 제2항 각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(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10조 제3항).

이 공고문은 대법원 홈페이지(www.scourt.go.kr)의 법원공고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11. 10. 22.

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민사부 재판장 판사 최승록